

「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,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
 - 「예비군법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
- 부서검토: 안전재난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예비군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1항에서 “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” 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,
-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“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예비군의 육성·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,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별표는 예비군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“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”을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현재 고아읍 송림리에 위치한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을 추후 칠곡군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을 적극 지원하길 바랍.